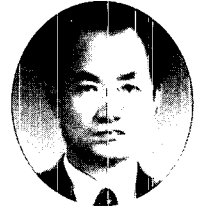


'98 자연환경보전업무추진계획



손희만
환경부 자연정책과장

I. 여건과 전망

자연환경행정의 여건

- ◆ 동식물의 멸종, 서식지 파괴 등 자연훼손이 사람에게 미치는 체감 충격은 대기·수질오염, 폐기물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보다 훨씬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자연보전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음
- ◆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자연환경관련 기초정보 자료의 축적이 미흡하고, 정부조직도 분산되어 강력하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추진에 애로
- ◆ 우리나라는 국가형성기간이 짧고,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중으로 경제개발과 자연보전간의 갈등관계가 지속

향 후 전 망

- ◆ 최근의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국가 또는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훼손이 줄거나 지연 될 것으로 보이며,
- ◆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,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져 자연환경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- ◆ 이러한 여건변화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

II. 업무추진방향

1. 기본방향

- ◇ 최소 비용으로 정책집행의 내실화 도모
- ◇ 자연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조화
- ◇ 국토 이용과 자연자산 보전의 조화

2. '98역점시책

- ◇ 생물다양성보전 ⇒ 생태적 건전성 향상·유지
 - 생물종 보호 : 우선보호대상종 선정 집중관리
 - 서식지 보호 :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확대
 - 생태계 복원 :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 보급 확산
- ◇ 사람과 자연의 공생기반 구축 ⇒ 자연친숙공간 확대
 - 국토사랑운동 추진 : 범국민운동으로 승화·발전
 - 자연학습원, 생태마을 조성 : 농어촌폐교활용, 시범마을지정 육성
 - 향토 생태계보전 네트워크 구축 : 학교,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역생태계 보전 유도

3. 추진전략

- ◇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태조사 및 평가 ⇒ 정확한 생태진단
- ◇ 생태계 유형별 생물다양성보전대책 추진 ⇒ 보존·복원·창조
- ◇ 자연자산의 건전한 이용기회 확대 ⇒ 국민참여 유도
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생물다양성 보전

추진 목표

- ◇ 야생 동·식물의 효율적인 보전
- ◇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서식지 보전
- ◇ 훼손된 생태계 복원

가. 생물종 보호

-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·식물보호 강화
 - 반달가슴곰, 두루미 등 개체별 보호대책 마련
 - 밀렵감시, 서식지 보전·복원 대책 지속 추진
 - 관계부처 공조체제 유지 : 산림청, 문체부, 내무부 등
 - 우선보호대상종 확정
 -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·식물(183종) 화보집 발간
- 생명공학 안전성 확보대책 추진
 - 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한 「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」의 제정('98년 말)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
 -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(LMOs)에 대한 대응조치 강구
- 서식지의 보전기관 활용을 통한 식물종 보전
 - 「목포 자생식물원」 건립 지원('98~'99)
 - 총 소요예산 : 15,000백만원(총 국고보조 : 476백만원)
 - 전시관 건립(300평) 및 유리온실(100평) 설치
 - 민간의 자생적인 서식지의 보전기능 강화
 - 전국의 식물원등 서식지의 보전기관 현황 조사 및 지정·관리
 - 정부, 학계, 민간을 망라한 서식지의 보전기관 간 특화 발전 및 종합 연계 방안 추진
 - 서식지의 보전기관 지정기준 및 민간식물원 등 지원방안 마련

- 생태계 위해 외래동·식물 관리 강화
 - 생태계 위해종에 대해 지속적인 퇴치사업 추진
 - 황소개구리 : 4~5월중 집중포획
 - 블루길, 베스 : 6~7월중 집중포획
 - ※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자리공, 돼지풀 등 귀화식물 225종과 황소개구리 및 블루길, 베스 등 귀화어류 8종 서식
- 잠재적 위해 외래종의 예방적 관리
 - “외래종 유입시의 안전성 심사기준”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
 - 전문가 자문기구(동물분과, 식물분과) 구성, 운영

나. 서식지 보호

-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
- 생태계보전지역을 2001년까지 30개지역으로 지정 확대

구 분	'96이전	'97	'98
보전지역	7개지역	17개지역(8)	47개지역(12)
지역계획	(91.25km ²)	(99.78km ²)	(180km ²)

- ※ '98년중 강화도 남단갯벌, 인제군 점봉산 진동계곡, 창원 주남저수지, 순천 동천강하구 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
- 생태계보전지역 관리대책 강구
 - 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·시행
- 주요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생태계 감시망(모니터링) 운영
 - 모니터링 대상지역 정비, 중점모니터링 지역을 확대지정
- 생태계보전지역 주민지원 제도화
 -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
 - 사유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시 주민지원방안 강구
 - 보전지역의 유형세분 및 유형별 보전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신축적·선택적 행위제한
 -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
 - 보전지역 또는 인근에 생태관광지구 지정, 지역주민에 입장료등 관광수입 환원방안 마련

- 점경지역 생태계 보전대책 추진
 - 점경지역 기본정책 세부추진계획 수립·시행
 - 생태계보전 정도, 토지이용 등에 따른 권역의 구분설정
 -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
 - 생태계모니터링등 생태계우수지역 관리계획 수립·추진
 - 탐조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설치 추진
 -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·피해보상 방안 마련
 -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강구
 - 위성 사진 등을 통한 생태계 개관조사 실시
 - 생태계 우수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방안 강구
 -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강구

-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대책 추진
 - 「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」 운영
 - 생태계 우수 도서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
 - '98년중 주요 도서(20개) 현지조사 실시

- 습지보전대책 추진
 - 갯벌 등 공유수면매립정책 정비
 - 공유수면매립 억제를 위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유도
 - 지방자치단체, 사업자에 대한 원칙적인 매립 억제
 - 농지확보용 해안 매립 억제 유도(농림부 협의 추진)
 - 주요습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·복원사업 추진
 - 대암산 용늪, 정족산 무제치늪, 수원 칠보산 늪 등

다. 생태계 복원

- 산림 생태계복원 추진
 - 야생동물 이동통로 건설사업 추진
 - 지리산 시암재, 태백산 구룡령 시범사업 마무리

-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생태통로 설치지침서 개발
- 백두대간의 생태계 단절 현황조사 실시
 - 기 훼손된 지역은 사업시행자, 관리기관에서 복원토록 권고
 - 신규 개발사업 시행시 생태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강화

- 농업생태계 복원 시범사업 실시
 -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무농약 시범영농 도입 추진
 - '98년중 사업타당성을 분석, 시범사업 규모·계약조건·대상지역 등 확정, '99년이후 시범영농 실시
 - 장기적으로 생물종, 토양, 수질 등 농업생태계 변화 추이 고찰

- 생물서식공간 복원 및 조성기술 보급
 - 소생태계 모델 정립, 시·도 교육청, 지자체에 보급 확산
 - 도시공간 담장·옥상 녹화기법 도입 타당성 검토
 - 자연형 하천공법 지침서 작성
 - 공법 도입을 위한 하천환경평가기법 개발
 - 공법별 표준 설계도 작성·효과 분석
 - 공법 적용구간의 사후관리기법 개발

2. 사람과 자연의 공생기반 구축

추진 목표

- ◇ 국토사랑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·발전
- ◇ 마을, 거리 등 생활주변에 자연친숙공간 조성

- 국토사랑운동 추진
 - 전국민이 참여하는 자연사랑운동, 국토청결운동, 녹색문화운동 등 3대 실천운동 전개
 - 자연사랑운동 : 우리 꽃, 나무, 동물 등 토착생태계 보전

- 국토청결운동 :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저감, 재활용 역점
- 녹색문화운동 : 녹색 생산 및 소비운동으로 자원절약, 근검절약 생활화
- 학계, 종교계, 사회단체 대표로 가칭「국토사랑 국민협의회」를 구성 추진
- 국토사랑운동의 지도이념, 실천강령 등 이론적 체계 정립
- 향토 생태계보전 네트워크 구축
 - 각 지역별 각급학교, 민간단체 중심으로 지역 생태계를 선정, 정기적인 생태계현황조사, 관찰, 감시, 보호 및 자연환경 교육자원으로 활용
 - 지역별 네트워크 참가 학교, 단체 확보 및 생태계조사, 모니터링 등에 관한 지침 개발·보급, 지원
- 생태마을조성 시범사업 실시
 - 생태마을조성에 관한 지침 작성
 - 생태마을 조성에 대한 연구(UNDP, 서울대학교 공동실시) 활용
 - 환경농업의 육성등 자연순환형 주민생활 유도
 - 자연형 셋방, 습지 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
 - 시·도별 시범마을 지정 및 관련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유도
- 「자연만남거리」 조성 추진
 - 지역별 특징 있는 주제를 개발하여 테마거리 조성 유도
 - 시·군·구별 1개지역 이상 조성 유도
- 농어촌 폐교 등을 활용한 「자연학습원」 조성
 - 폐교 등을 활용한 「자연학습원」 조성 방안 마련 (환경부, 교육부, 광역자치단체 합동)
 - 현재 운영중인 자연학습원 및 청소년수련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·평가
 -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「자연학습원」 모델 개발 및 입지선정
 - ※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소생태계, 야생

화동산, 생물표본 전시 등 생태체험학습에 필요한 시설은 기존시설 보완 설치

3. 자연환경 관리체계 내실화

추진 목표

- ◇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연현황 기초자료 확보
- ◇ 기초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자연생태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

- 제2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('97 - 2001) 추진
 - 조사지역 : 전국 351개 권역(육지 206, 해안 145개)중 총 50개권역(육지 : 30개권역, 해안 : 20개권역)
 - 소요예산 : 17억원
 - ※ 위성사진 판독기법 개발 활용(1개 소권역 시범추진)
- 자연환경관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
 - 자연환경전국조사결과 및 기존자료를 종합, 자연환경관련정보를 지리정보체계(GIS) 데이터베이스화
 - '98년중 3개 소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시스템 개발(예산 320백만원 투자)
 - '99년이후 시범시스템의 권역별 확장 추진
- 생물표본관 건립
 - 국립생물표본관 건립을 위한 입지 조사실시
 - 우포늪 인근지역, 강원도 자연생태연구공원, 종합환경연구단지등
 - 생물표본관리 프로그램 개발(당분간 획득된 표본 5개대학 위탁)
- 자연생태 연구공원 조성('97~2001)
 - 강원도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(총사업비 550억원)
 - '98년중 실시설계 완료(국고보조 : 5억원)
 - ※ 자연생태연구센터, 종합환경과학관, 자연생태

탐방공간, 생태박물관 등 설치

- 자연환경관련 국제협력 강화
 - 생물다양성협약, CITES, 람사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 대처
 - 생물다양성 정보운영체제 참여, 람사협약 등록 습지 추가 등재 추진
 - UNESCO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공동비교연구사업 지원
 - IUCN 한국위원회(가칭) 결성·운영
 - WWF 등 국제자연보전기구·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
-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세부 실천계획 수립
 - 주요종별·생태계별 보전대책, 생물표본관리, 생명공학안전성 대책, 생물다양성 정보관리 대책 마련

4.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

추진 목표

- ◇ 평가법 개정에 따른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
- ◇ 사전협의업무 및 협의내용 사후관리 방안

-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
 - 환경, 교통, 인구, 재해영향평가의 통합 추진
 - 1단계 : 절차의 통합('98. 6)
 - 통합평가서 작성, 주민의견 수렴의 동시 진행 등
 - 2단계 : 제도의 통합(2001. 1)
 -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서 작성, 협의, 사후관리를 일원화
-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
 -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착
 -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('98.12)
 - 시·도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제정 유도
 -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법 개발('98.12)

- 인구, 교통, 경관 등 사회·경제 환경분야 평가 기법 개발·보급
- '82~'96까지 평가협의사업에 대한 지역별 및 사업별 특성 분석, 기법적용사례분석 등 개선 방안 수립

- 사전협의업무 강화
 - 사전협의업무검토편람 제정
 - 개발사업 유형별, 지역특성별 검토방법을 제시하여 지방환경관서등 관계기관에 배포('98. 2)
 - ※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
 - 사전협의를 따른 환경성검토대상사업의 사후관리
 -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('98. 4)
 -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의 개정 추진('98. 8)

- 협의내용 사후관리 강화
 - 협의내용 사후관리 지침 개정
 -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질적 이행 확보
 -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년 2회
 - 공사중지명령,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강화
 -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투자기준 제정
 - 대기, 수질, 소음, 폐기물과 관련한 사업비중 일정금액을 환경오염방지비용으로 사용